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35
----------	-------

발의연월일 : 2026. 9. 7.

발 의 자 : 소병훈 · 김재원 · 이수진
박용갑 · 이춘석 · 서영석
권향엽 · 이인영 · 전종덕
강준현 · 안태준 · 김 윤
서미화 · 권칠승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제63조제1항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제4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인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47조의4(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체계 구축 · 운영)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효과적으로 예방 ·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 ·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 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예방 · 대응체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 ----- -----.

1. ~ 5.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

1. ~ 5. (현행과 같음)

6.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

---- 제47조제1항, 제47조의4제

1항-----

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	---